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pp.385~418  
한국세무학회

##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김영철\*\* · 김우영\*\*\* · 고종권\*\*\*\*

### <요 약>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구성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평가충당금)은 미국의 SFAS No. 109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로써 경영자의 재량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상장 12월말 결산법인 중 제조업 법인을 연구표본으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연법인세 자료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한 세무조정항목을 이용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될 수 있는 최대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률은 두 금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서 약 7%인 1,986백만원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9-N).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kyc7902@hanyang.ac.kr, 010-9177-6534, 주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kimwy01@dongduk.ac.kr, 02-940-4307, 공동저자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kko@hanyang.ac.kr, 02-2220-1042, 교신저자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추정방법과 추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에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추정 방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실현가능성, 소멸가능성

## I. 서 론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으로 계상된다. 이연법인세부채가 이연법인세자산보다 큰 경우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고, 반대의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다. 즉, 순이연법인세 계정(자산 또는 부채)은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이란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요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이하,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가 미래에 반전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차이 또는 미래과세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반전되어 미래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세회계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미래과세소득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과세소득은 현재 실현되지 않은 과세소득의 예측치로써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소멸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시적차이는 세법상 귀속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 소멸되지만 소멸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부분 인식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소멸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분 인식될 수 있다.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은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부분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크기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특히, 대차대조표상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크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Miller and Skinner 1998 ; Reazee 2002).

미국의 SFAS No.109(Accounting for Income Taxes)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FAS No.109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sup>1)</sup>)에만 계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표시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와 다르다. SFAS No.109는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의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평가충당금(*valuation allowance*)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평가충당금을 대차대조표에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하여 경영자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식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이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을 판단하기 어렵다.<sup>2)</sup>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이연법인세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경영자들이 이연법인세계정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무 분석가의 예측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이 평가충당금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and Skinner, 1998 ; Visvanathan, 1998 ; Bauman et al., 2001 ; Frank and Rego, 2006). 국내에서도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평가충당금 또는 인식률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추정하거나 이

- 
- 1) 여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란 50% 이상의 확률을 의미한다.(The “more likely than not” standard represents a probability of more than 50%.) 우리나라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 2) 기업회계기준 16호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과 그의 판단근거가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합한 평가충당금은 일부 기업 외에는 제시되지 않다. 그리고 주석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의 오류도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이용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주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신현걸, 2003 ; 안숙찬, 2007 ; 최원욱 · 장금주, 2007). 또한 신현걸(2003)의 방법론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안숙찬(2007)의 방법론은 소멸가능성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인식되지 않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경우 인식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원욱과 장금주(2007)는 평가충당금을 모두 주식사항에서 집계하여 자료획득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이월세액공제가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원욱과 장금주(2007)의 방법론으로 인식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고, 주식사항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2002년까지 한정되어 측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을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측정 하였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 또는 평가충당금의 측정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금액을 주식사항에서 집계하기보다 몇 가지 가정을 대입하여 수작업을 간소화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유가증권상장 제조업을 대상으로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뿐만 아니라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을 포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연법인세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연구에 기본적인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식사항에서 나타난 일시적차이 등의 세무조정항목을 수집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였다.

먼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전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될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정의하고,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차대조표상 실제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정의하였다. 평가충당금은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차이로 측정되며, 인식률은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추가분석을 통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측정된 평가충당금은 평균 1,986백만원, 인식률은 약 93%로 나타났다. 한편, 대차대조표상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표본(이하,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3,865백만원, 인식률은 약 89%로 나타났으며, 대차대조표상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된 표본(이하,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113백만원, 인식률은 약 9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 가운데 1,986백만원, 약 7%는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작은 순이연법인세자산 표

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연법인세회계, 평가충당금의 결정요소에 대해서 기술하고,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III장의 연구 설계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요소의 가정에 따라 평가충당금 추정모형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추정모형에 따른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의 결과를 제시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한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공헌점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평가충당금

이연법인세회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에 기업회계기준 제52조로 제정되어 1998년 4월 1일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도입에 따라 2004년 4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가 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면서 기존의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라는 용어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변경되었고, 비유동으로 표시하였던 이연법인세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국제적인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공시방법도 변경되었다.<sup>3)</sup>

법인세회계는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대차대조표상 유동과 비유동의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공시하며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대차대조표상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즉, 평가충당금은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하는 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24, 25 및 26에

3) 법인세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은 IFRS의 도입 전의 상황만을 기술한다. 2009년 10월 현재까지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IFRS의 도입 전이므로 IFRS와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서 규정하고 있는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응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한 경우,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무정책이 가능한 경우이다.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당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한 회사로서 차기이후 예상연평균계속사업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sup>4)</sup> 세무정책의 경우로는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각하고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미래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미래과세소득,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무정책의 크기와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래과세소득과 세무정책은 미래예측치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를 판단하는데도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경영자의 채량적 판단에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sup>5)</sup>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36<sup>6)</sup>, 37<sup>7)</sup>, 39<sup>8)</sup>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일시적차이의 소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A26

-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6호 문단 40에 따라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의 지분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예측가능 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이연법인세부채뿐만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 역시 소멸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소멸가능성 판단 역시 경영자의 판단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부분인식을 가져오므로 평가충당금 추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된 소멸가능성은 이연법인세부채에 한정하여 사용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소멸가능성은 실현가능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6)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지배회사,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 7)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함으로써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8)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들은 통상 이익분배 사항을 논의하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과 일정한 지분을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 등을 결정한다.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이익분배방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요소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에 필요한 요소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이며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 요소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미래적용세율<sup>9)</sup>을 곱한 후 이월세액공제를 더하여 계산된다. 이월세액공제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직접 감소시키므로 이월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소멸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의 식(1)과 같다.

$$\text{이연법인세자산} = (\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 \text{세무상 이월결손금})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text{이월세액공제} \quad (1)$$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식(2)와 같이 계산된다.

$$\text{이연법인세부채} = \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quad (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상계되어 대차대조표에 순액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부채보다 크면 대차대조표에는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식(1)에서 (2)를 차감한 것과 동일하므로 다음 식(3)으로 표현된다.

$$\begin{aligned} & \text{순이연법인세자산} \cdot \text{부채} \\ &= (\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 \text{세무상 이월결손금})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text{이월세액공제} \\ & \quad - \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 (\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 \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 \text{세무상 이월결손금})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 \quad + \text{이월세액공제} \end{aligned} \quad (3)$$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매년도 말에 세무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또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재계산한다. 즉, 차감할 일시적차이,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재계산하여 대차대조표의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수정하게 되고 이러한 수정효과는 법인세비용에 반영된다. 순이

9) 대차대조표일 현재까지 확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에 주민세 10%를 고려한 최고세율을 기초로 미래기간에 적용될 예상세율이다. 여기서 최고세율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0.8%,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9.7%,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7.5%, 2009년 24.2%, 2010년 22.0% 이다.

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또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변동될 수 있는데,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및 자산의 예상되는 회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이다.<sup>10)</sup>

#### 나.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경영자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될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과 경영자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판단하여 실제로 대차대조표상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연법인세부채도 소멸가능성의 판단여부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될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부채로 정의하며 소멸가능성을 판단하여 실제로 대차대조표상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에 소멸가능성을 추정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선행연구와 같이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과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율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로 정의한다(신현걸, 2002 ; 안숙찬, 2005, 2007).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순액으로 표시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기 전에 상계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이 개입되었다면,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 세무상 이월결손금) × 미래적용세율 + 이월세액공제]보다 작은 금액이고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역시 (가산할 일시적차이 × 미래적용세율)보다 작은 금액일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의 효과는 평가충당금으로 계산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 2.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별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법인세비용 주식사항 등을 이용하여 평가충당금 및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

인식률을 추정하였다.

신현걸(2003)은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인세효과 인식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TAXEFR(\text{법인세효과인식률}) = \frac{BDTAL}{EDTAL}$$

여기에서 BDTAL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고, EDTAL은 추정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EDTAL = (\text{일시적차이 기말잔액} + \text{세무상 결손금}) \times \text{세율}$$

여기서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세액공제를 세율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 변수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계상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신현걸(2003)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미래 실현가능성(또는 소멸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한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이연법인세 최대 금액으로 나누어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신현걸(2003)에서 언급되었듯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현걸(2003)의 방법론에 따라 인식률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식률이 1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결과 연도별로 인식률이 1보다 큰 경우가 발생되며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식률을 추정하는 경우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숙찬(2005)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text{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 = \frac{\text{이연법인세자산} + (\text{조정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세율})}{\text{조정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 \times \text{세율}}$$

여기에서 조정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멸가능성이 있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의미한다. 조정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 이월결손금 + 이월세액공제 ÷ 세율)로 계산하며 (조정된 차감할 일시적차이 × 세율)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이연법인세자산에 해당된다.

연구기간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은 약 91.5%에서 92.12%까지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표본수가 314개밖

에 되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숙찬(2005)의 방법은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경우만을 고려하여 인식률을 측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안숙찬(2007)은 2005년 연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을 추정하였다.

$$\text{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 = \frac{\text{이연법인세자산}}{(\text{조정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 - \text{조정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 \times \text{세율}}$$

분모의 구성요소 가운데 조정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월결손금, 세율을 감안한 이월세액공제의 합을 나타내며, 조정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가운데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분모인 (조정된 차감할 일시적차이 - 조정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 세율은 실현가능성이 고려하지 않은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수 있는 순이연법인세자산 최대금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안숙찬(2007)의 방법론 역시 앞의 연구와 동일하게 대차대조표에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된 표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대상연도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정되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등이 가산할 일시적차이보다 큰 약 625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은 66.31%에서 71.10%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Miller and Skinner(1998)가 제시한 인식률인 87.8%에서 88.5%보다 약 17%p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원욱과 장금주(2007)는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연구하였는데, 평가충당금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첫째 방법은 감사보고서 주식에 공시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계산하였다. 둘째 방법은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였다.

$$\text{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 \left( \begin{array}{l} \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 결손금 중 장래법} \\ \text{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금액} \end{array} \right) \times \text{한계세율}$$

최원욱과 장금주(2007)의 연구에서 평가충당금은 감사보고서상의 주식사항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산식을 이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이용하여 이익조정과의 관계 또는 재무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평가충당금 또는 인식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평가충당금 또는 인식률의 추정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의 추정과정에서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의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뿐만 아니라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을 포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하였다.

### III. 연구 설계

#### 1.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추정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는 순액으로 계상되며, 순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순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된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sup>11)</sup>을, 이연법인세부채는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식된다. 이처럼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이 고려한 경우,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식(4)와 같다.

순이연법인세자산 · 부채

$$= (A)[(\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 \text{세무상 이월결손금})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text{이월세액공제}] \times \text{실현가능성} \\ - (B)[\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times \text{소멸가능성} \quad (4)$$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 1인 경우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전액 인식된 경우이며, 소멸가능성이 1인 경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부채로 전액 인식된 경우이다. 한편,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이 1 미만이면 실현가능성 또는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부분 인식되는 경우이다.

평가충당금은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과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차이로 계산되며, 인식률은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율로 계산된다. 식(4)와 같이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과 이연법인세부채(B)가 상계되어 계상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식(4)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을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식(4)을 이용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 식(5)와 같이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B)의 값을 가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A)[(\text{차감할 일시적차이} + \text{세무상 이월결손금})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 \text{이월세액공제}] \times \text{실현가능성} \\ = \text{순이연법인세자산} \cdot \text{부채} + (B)[\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times \text{소멸가능성} \quad (5)$$

여기서,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매연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식(5)에서 계

11) 여기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소멸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식되지만, 실현가능성 및 소멸가능성에 낮아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모두 평가충당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으로 식(5)의 우변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우변의 계산결과가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된다. 그러나 우변에서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는 경우에는 우변의 계산결과는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times 2$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된다. 따라서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는 경우에도 식(5)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순이연법인세부채(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에 -1을 곱한 후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B)를 가산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였다.

#### 가.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에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추정

식(5)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을 추정하기 위해선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B)에 대한 소멸가능성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식(5)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A)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은 이연법인세자산보다 부채가 크며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큰 표본이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응될 수 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이 전액 인식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은 이연법인세자산이 부채보다 크며,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가산할 일시적차이보다 큰 표본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전액 인식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과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을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경우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전액 인식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1로 볼 수 있다.<sup>12)</sup> 이 경우 순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으로 표현되므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전액인식 이연법인세부채로 나누어 계산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은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소멸가능성} = \left[ \frac{\text{순이연법인세부채} + \text{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text{전액인식 이연법인세부채}} \right] \quad (6)$$

그러나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부분 인식된 경우, 실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보다 작은 값이 된다. 따라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부분 인식된 경우 식(6)과 같이 순이연법인세부채에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

12)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나,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평가충당금을 측정할 수 없다. 선행연구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추정의 한계점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의 평가충당금 측정법은 추정의 오차가 더 클 수 있다.

산을 가산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정하게 되면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차이만큼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는 과대평가 되며, 소멸가능성 역시 과대평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실제 소멸가능성은 1보다 클 수 없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부분 인식된 경우 식(6)에서 측정된 소멸가능성은 1보다 큰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처럼 식(6)에 따라 추정된 소멸가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1로 조정하였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이 모두 부분 인식되는 경우 식(6)에서 측정된 소멸가능성이 과대평가되는 오류를 모두 수정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나.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추정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응될 수 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전액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과 같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경우 식(6)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에 측정된 소멸가능성을 당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 가운데 이전 기간에 순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경우 식(6)에 따라 과거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과거의 소멸가능성을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연도에 적용한다. 이 방법이 타당한 이유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 이유로 “해당자산(예, 토지, 지분법주식)의 미래 처분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는 해당자산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멸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추정 역시 회계 정책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번 채택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순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경우의 소멸가능성을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유사기업의 소멸가능성을 대용하는 방법이다. 표본기간에 걸쳐 모두 순이연

13) 토지는 투자자산의 성격이 강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법주식은 지배력 차원에서 보유하는 주식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토지와 지분법주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보유하게 되며 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는 소멸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자산이 계상된 표본의 경우 과거 소멸가능성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 4개를 선정한 후, 선정된 유사기업의 소멸가능성 평균치를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소멸가능성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과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간의 대응에 사용된 기업특성은 연도, 산업, 외부감사인, 경상이익률(경상이익/기초총자산)이다. 연도를 대응시킨 것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에 적용되는 미래세율을 일치시켜 세율 변경으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변동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을 대응시킨 것은 유사한 산업에 속할 경우 경영환경이 유사하여 세무조정도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대응시킨 것은 감사에서 적용되는 중요성기준 및 회계정책에 대한 적용 기준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상이익률을 대응시킨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효과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대응기준을 적용하여 유사기업표본의 소멸가능성을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소멸가능성으로 대응하며, 이렇게 추정된 소멸가능성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부채  $\times$  미래적용세율)에 곱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한다.

## 2.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소멸가능성이 추정되면 대차대조표상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 [(\text{가산할 일시적차이}) \times \text{미래적용세율}] \times \text{소멸가능성}$$

여기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기말누계액이며, 미래적용세율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시점에서 확정된 미래의 법인세세율이다. 소멸가능성 추정치는 0보다 크고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경우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아래 식과 같이 순이연법인세자산에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가산하여 계산된다.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는 경우에는 순이연법인세부채에 음(-)의 값을 취한 후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가산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

$$\text{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text{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text{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여기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경영자가 실현가능성을 판단한 후의 대차대조표상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이다. 경영자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전액 인식되며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 이월결손금) × 미래적용세율 + 이월세액공제

평가충당금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되지 못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과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차이로 측정된다. 또한 인식률은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평가충당금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계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B/S상 이연법인세부채가 100 계상되어 있고, 기말 감사보고서상 주식사항의 세무조정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 600, 세무상 이월결손금 : 100, 이월세액공제 24  
 가산할 일시적차이 : 1,000  
 미래 적용세율 : 30%  
 -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0은 모두 소멸가능성이 확실하다.

### \* 풀이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계산

-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추정치 :  $1,000 \times 30\% \times 1 = 300$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100 + 300 = 200$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600 + 100) \times 30\% + 24 = 234$
- 평가충당금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234 - 200 = 34$
- 인식률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200 \div 234 = 85.47\%$

사례 I 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측정된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이 다. 만약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부분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측정하는 경우 평가충당금은 과소평가되고 인식률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사례 II 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부분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잘못 측정한 경우이다.

## 사례 2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부채가 40 계상되어 있고, 기말 감사보고서상 주식사항의 세무조정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 600, 세무상 이월결손금 : 100, 이월세액공제 24

가산할 일시적차이 : 1,000

미래 적용세율 : 30%

—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0 가운데 20%인 200만원은 소멸가능성이 확실치 않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은 1,000에서 소멸가능성을 고려한 800에 미래적용세율을 곱한 300의 80%인 240이다.

## \* 풀이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이 80%이나 이를 100%로 계상하면 다음과 같이 충당금과 인식률이 계산된다.

-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추정치 :  $1,000 \times 30\% \times 1 = 300$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40 + 300 = 260$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600 + 100) \times 30\% + 24 = 234$
- 평가충당금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234 - 260 = -26$
- 인 식 륜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260 \div 234 = 111\%$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계산한 경우]

-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 추정치 :  $800 \times 30\% \times 1 = 240$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40 + 240 = 200$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600 + 100) \times 30\% + 24 = 234$
- 평가충당금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234 - 200 = 34$
- 인 식 륜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200 \div 234 = 85.47\%$

사례Ⅱ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0 가운데 200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이다. 만약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가 전액 인식된다면 300이 인식되어야 하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 중 일부인 240만큼 부분인식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었다.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240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였다면 평가충당금은 34, 인식률은 85.47%로 사례Ⅰ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하여 사례Ⅱ와 같이 평가충당금이 과소평가되고 인식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 3.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 ①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② 재무자료 및 감사보고서상 주식사항에 연구에 필요한 법인세비용 내역이 공시된 기업
- ③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 ④ 미래적용세율을 적용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가산할 일시적차이 비율과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 표본 형태(자산 및 부채)가 동일한 기업

연구표본을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된 것은 결산월과 업종에 따라 재무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자료는 TS-2000과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세무조정자료인 가산할 일시적차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 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감사보고서 주식사항 중 법인세비용에서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작업으로 인해서 오류가 있는 세무조정자료의 일부는 삭제하였다. 세무조정자료의 오류 유형으로는 세무상 기초 이월세액공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사항에서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경우 또는 이연법인세 계산과정에서 동일한 연도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동일한 미래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달리 적용한 경우 등이다.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에 해당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과 감사보고서 주식사항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제거하였다. 그리고 연구표본의 극단치(outlier)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변수 중 상위와 하위 1%를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최종표본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635개 기업-연도표본이다.

〈표 1〉 연구표본

| 표본 선정기준                    | 표본수   |
|----------------------------|-------|
| 제조업 영위 유가증권 상장사 중 12월 말 법인 | 5,149 |
|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 제외        | (889) |
| 세무조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 제외      | (379) |
| 감사의견 적정이외 표본 제외            | (18)  |
| 극단치 $\pm 1\%$ 제거           | (228) |
| 최종 표본수                     | 3,635 |

〈표 2〉에는 각 연도별로 대차대조표상 순이연법인세자산과 순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된 기업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순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한 표본수가 순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표본수보다 크고 1999년만 반대로 순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표본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전체로는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이 전체표본의 53.89%이고,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은 46.11%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표본 현황

| 연 도  | 표본수      |        |          |        |       |
|------|----------|--------|----------|--------|-------|
|      | 순이연법인세자산 |        | 순이연법인세부채 |        | 총 표본수 |
| 1999 | 146      | 48.99% | 152      | 51.01% | 298   |
| 2000 | 156      | 50.49% | 153      | 49.51% | 309   |
| 2001 | 168      | 54.55% | 140      | 45.45% | 308   |
| 2002 | 176      | 56.96% | 133      | 43.04% | 309   |
| 2003 | 184      | 61.33% | 116      | 38.67% | 300   |
| 2004 | 225      | 60.81% | 145      | 39.19% | 370   |
| 2005 | 195      | 51.72% | 182      | 48.28% | 377   |
| 2006 | 220      | 52.01% | 203      | 47.99% | 423   |
| 2007 | 241      | 53.44% | 210      | 46.56% | 451   |
| 2008 | 248      | 50.61% | 242      | 49.39% | 490   |
| 총계   | 1,959    | 53.89% | 1,676    | 46.11% | 3,635 |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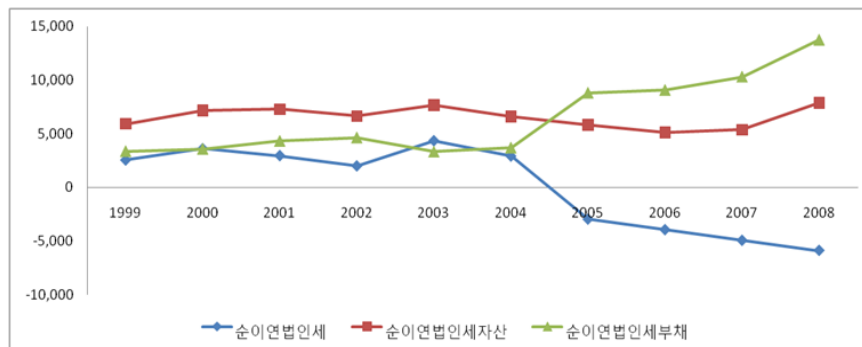
<표 3>은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및 인식을 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도별 순이연법인세(순이연법인세자산, 순이연법인세부채)와 일시적차이 등(차감할 일시적차이,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기술통계량이다.

#### 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기술통계량

<표 3>의 PANEL A는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및 인식을 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도별 순이연법인세(순이연법인세자산에서 순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순이연법인세자산 및 순이연법인세부채의 기술통계량이다.

순이연법인세는 2005년 이전에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순이연법인세부채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순이연법인세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순이연법인세부채와 순이연법인세자산간의 차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이연법인세 연도별 추세



순이연법인세자산은 2008년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순이연법인세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이연법인세부채는 2005년 이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연법인세부채의 연도별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기간에 비해 이후기간에 순이연법인세부채의 크기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PANEL A의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추세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2005년 이후 순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순이연법인세가 음(-)의 값을 갖는 모습을 확연히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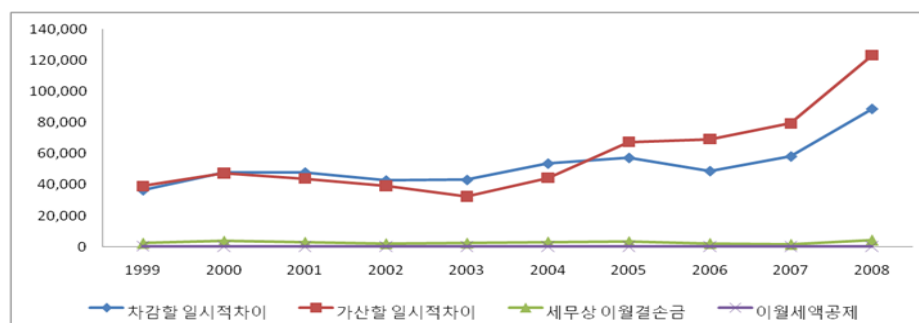
## 나. 세무조정자료의 기술통계량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자료인 차감할 일시적차이, 가산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의 연도별 기술통계량은 <표 3>의 PANEL B에 제시하였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과거 세무상 결손이 발생되어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다. 이월세액공제는 과거 세액공제 중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미래 법인세를 직접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다.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요소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요소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표본기간 중 2008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연법인세자산이 2008년에만 급격하고 변동하고 순이연법인세부채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한 <표 3>의 PANEL A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이월결손금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 표에는 보고되지 않지만 연도별 중위수는 모두 영(0)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월세액공제의 값이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보다 작은 이유는 직접적인 세금차감항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보편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항목이 아님을 나타내며, 시계열적 특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항목임을 의미한다. <표 3> PANEL B의 추세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연도별 추세



<그림 2>에서 나타난 세무조정 항목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5년부터 증가하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08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표 3>의 PANEL A에서 2005년 이후 순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순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는 큰 변동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영(0)에 근접된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보편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항목이 아님을 나타내며, 시계열적 특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항목임을 의미한다.

〈표 3〉 연도별 이연법인세와 일시적차이 등의 기술통계량

| PANEL A : 연도별 이연법인세의 기술통계량 |     |        |        |          |        |          |        |  |  |
|----------------------------|-----|--------|--------|----------|--------|----------|--------|--|--|
| 연도                         | 표본수 | 순이연법인세 |        | 순이연법인세자산 |        | 순이연법인세부채 |        |  |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  |
| 1999                       | 237 | 2,542  | 25,081 | 5,915    | 20,960 | 3,373    | 12,236 |  |  |
| 2000                       | 257 | 3,595  | 31,054 | 7,185    | 26,812 | 3,590    | 13,918 |  |  |
| 2001                       | 257 | 2,950  | 32,668 | 7,280    | 25,544 | 4,330    | 18,748 |  |  |
| 2002                       | 259 | 1,993  | 29,333 | 6,638    | 19,526 | 4,646    | 20,428 |  |  |
| 2003                       | 258 | 4,339  | 27,323 | 7,670    | 22,300 | 3,331    | 14,071 |  |  |
| 2004                       | 316 | 2,908  | 23,173 | 6,611    | 18,176 | 3,702    | 12,671 |  |  |
| 2005                       | 330 | -2,968 | 29,906 | 5,841    | 15,813 | 8,809    | 27,118 |  |  |
| 2006                       | 384 | -3,951 | 29,885 | 5,125    | 14,878 | 9,075    | 26,775 |  |  |
| 2007                       | 415 | -4,943 | 31,755 | 5,367    | 16,254 | 10,310   | 28,056 |  |  |
| 2008                       | 431 | -5,881 | 38,806 | 7,862    | 22,232 | 13,743   | 37,376 |  |  |

| PANEL B : 연도별 일시적차이 등의 기술통계량 |     |           |         |           |         |           |        |        |       |
|------------------------------|-----|-----------|---------|-----------|---------|-----------|--------|--------|-------|
| 연도                           | 표본수 | 차감할 일시적차이 |         | 가산할 일시적차이 |         | 세무상 이월결손금 |        | 이월세액공제 |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 1999                         | 237 | 36,486    | 112,699 | 39,014    | 101,001 | 2,426     | 14,527 | 426    | 2,853 |
| 2000                         | 257 | 47,619    | 141,904 | 47,338    | 122,995 | 3,734     | 23,566 | 285    | 2,025 |
| 2001                         | 257 | 47,861    | 137,075 | 43,938    | 126,014 | 2,981     | 18,033 | 257    | 2,042 |
| 2002                         | 259 | 42,743    | 102,865 | 39,314    | 114,722 | 2,157     | 12,609 | 193    | 1,549 |
| 2003                         | 258 | 43,105    | 93,650  | 32,396    | 68,891  | 2,472     | 18,641 | 248    | 1,643 |
| 2004                         | 316 | 53,609    | 114,639 | 44,384    | 100,675 | 3,170     | 21,633 | 276    | 2,345 |
| 2005                         | 330 | 57,286    | 119,365 | 67,513    | 163,385 | 3,384     | 18,223 | 376    | 2,199 |
| 2006                         | 384 | 48,791    | 102,282 | 69,283    | 176,452 | 2,254     | 16,603 | 142    | 878   |
| 2007                         | 415 | 58,203    | 120,733 | 79,410    | 182,278 | 1,691     | 12,674 | 342    | 2,620 |
| 2008                         | 431 | 88,814    | 182,337 | 123,248   | 258,425 | 4,434     | 20,673 | 363    | 2,170 |

주1) 순이연법인세는 순이연법인세자산에서 순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2) 단위는 백만원이다.

3) 분석결과의 표본은 상하1%가 제거되었다.

## 2.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추정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I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은 식(6)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 중 과거 순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표본은 과거 자료를 식(6)에 적용하여 계산한 소멸가능성을 이용하였고, 표본 기간에 순이연법인세자산만 계상된 표본은 연도, 산업, 외부감사인, 경상이익률이 유사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소멸가능성을 대용치로 이용하였다.

전체 표본의 연도별 소멸가능성은 <표 4>의 PANEL A에 제시하였는데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은 92%로 나타났다.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가운데 92%만이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8%는 소멸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례II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 PANEL A : 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       |        |        |         |
|-----------------------------------|-------|--------|--------|---------|
| 연 도                               | 표본수   | 평균값    | 표준편차   |         |
| 1999                              | 298   | 0.9350 | 0.1518 |         |
| 2000                              | 309   | 0.9477 | 0.1238 |         |
| 2001                              | 308   | 0.9569 | 0.1195 |         |
| 2002                              | 309   | 0.9557 | 0.1219 |         |
| 2003                              | 300   | 0.9506 | 0.1352 |         |
| 2004                              | 370   | 0.9229 | 0.1405 |         |
| 2005                              | 377   | 0.9142 | 0.1594 |         |
| 2006                              | 423   | 0.8806 | 0.2018 |         |
| 2007                              | 451   | 0.8982 | 0.1756 |         |
| 2008                              | 490   | 0.9059 | 0.1635 |         |
| 전체표본                              | 3,635 | 0.9232 | 0.1563 |         |
| PANEL B : 집단별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 차이분석 |       |        |        |         |
| 집단구분                              | 표본수   | 평균값    | 평균차이   | 차이검증t값  |
| 순이연법인세자산표본                        | 1,959 | 0.9334 | 0.0214 | 3.96*** |
| 순이연법인세부채표본                        | 1,676 | 0.9119 |        |         |

주1) \*\*\*, \*\*, \*은 통계적으로 1%, 5%, 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표 4>의 PANEL A에 따르면 소멸가능성은 연도별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04년 이후 소멸가능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의 소멸가능성이 88.06%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표 3>의 PANEL B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2005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경영자들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증가될수록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에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소멸가능성의 최소값은 17% 정도로 나타났다.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표본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은 <표 4>의 PANEL B에 보고하였는데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소멸가능성은 91.19%인 반면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소멸가능성은 93.34%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보다 2%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본 간 소멸가능성의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표본에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에 대한 중위수는 모두 1의 값으로 나타났다.

### 3.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표 5>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한 후 측정한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이다. <표 5>의 PANEL A는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의 연도별 추세와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PANEL B는 순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표본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표본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의 연도별 추세를 나타내는 <표 5>의 PANEL A에 따르면 평가충당금은 특히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은 1,986백만원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 역시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에 가장 낮은 89.42%의 인식률을 보고한 후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평가충당금이 증가하며 인식률이 감소하는 결과는 2004년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기준이 보다 보수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표본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의 추정치는 92.74%이다.

<표 5>의 PANEL A에 제시된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의 추정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해야할 대상 중 약 93%만이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며,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비율은 약 7%이고 금액으로는 1,986백만원<sup>14)</sup>으로 추정된다.

14) Pattillo(1983)는 당기순이익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요하다는 간편법(rule of thumb)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성기(2002)는 대차대조표상 특정항목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금액이 약 10억 이상 50억 미만임을 언급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대상 이연법인세자산 가운데 평균적으로 7%이며, 1,986백만원이다. 이 금액(1,986백

<표 5>의 PANEL B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평균 3,86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평균 11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표본간 평가충당금의 차이는 3,742백만원으로 1% 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보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평가충당금이 큰 것은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 대한 평가충당금의 중위수는 17백만원이고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에 대한 평가충당금의 중위수는 0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 PANEL A : 연도별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       |       |          |        |           |
|--------------------------------|-------|-------|----------|--------|-----------|
| 연도                             | 표본수   | 평가충당금 |          | 인식률    |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 1999                           | 298   | 772   | 4,618    | 0.9419 | 0.1285    |
| 2000                           | 309   | 942   | 4,669    | 0.9586 | 0.1234    |
| 2001                           | 308   | 1,367 | 7,239    | 0.9579 | 0.1312    |
| 2002                           | 309   | 2,034 | 8,797    | 0.9612 | 0.1414    |
| 2003                           | 300   | 1,377 | 8,079    | 0.9549 | 0.1464    |
| 2004                           | 370   | 2,814 | 9,455    | 0.9201 | 0.1841    |
| 2005                           | 377   | 2,761 | 9,131    | 0.9119 | 0.1884    |
| 2006                           | 423   | 2,244 | 8,313    | 0.9075 | 0.1886    |
| 2007                           | 451   | 2,837 | 9,002    | 0.8942 | 0.2054    |
| 2008                           | 490   | 2,461 | 9,211    | 0.9045 | 0.1930    |
| 전체표본                           | 3,635 | 1,986 | 8,713    | 0.9274 | 0.1718    |
| PANEL B : 집단별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차이분석 |       |       |          |        |           |
| 집단구분                           | 표본수   | 평가충당금 |          | 인식률    |           |
|                                |       | 평균값   | 차이검증t값   | 평균값    | 차이검증t값    |
| 순이연법인세자산표본                     | 1,959 | 3,865 | 12.37*** | 0.8853 | -15.36*** |
| 순이연법인세부채표본                     | 1,676 | 123   |          | 0.9738 |           |

주1) 평가충당금의 단위는 백만원이다.

2) \*\*\*, \*\*, \*은 통계적으로 1%, 5%, 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만원)은 당기순이익 대비 약 27%이며, 절대적 금액으로 10억을 초과한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1,986백만원은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정보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의 PANEL B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인식률은 88.53%인 반면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인식률은 97.38%로 표본간 인식율의 차이는 8.85%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률에 대한 표본간 차이검증결과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에 비해 인식률이 낮은 것은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보다 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평가충당금이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5>에서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한 결과는 표본기간 중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체로 평가충당금은 증가하고 인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보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존재로 인해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멸가능성이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표 4>의 결과와 종합하여 판단하면 2004년 이후 실현가능성 및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자의 판단이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회계환경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보다 엄격화 되었다. 2004년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이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하고 있는 <표 4>와 <표 5>의 결과는 이러한 회계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가충당금은 이론적으로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고 인식률은 1보다 클 수 없다. 그러나 <표 5>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평가충당금의 최소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률은 1을 초과하는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이연법인세자산 표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소멸가능성을 직접 계산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러나 인식률이 1을 초과하는 표본수는 81개로 전체표본의 2.2%에 불과하다. 즉,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 추정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극히 일부 표본에 국한되며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추가분석

경영자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평가충당금)은 커지고(작아지고) 법인세비용은 감소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은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추가분석으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으로 기업특성을 미래 과세소득의 충분성,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의 크기, 이익조정 유인 및 감사품질로 구별한다.

#### 가. 미래 과세소득의 충분성

기업회계기준서 16호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란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하거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응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한 경우이다. 따라서 미래의 과세소득이 충분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보다 클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과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 나.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의 크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인식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며, 소멸시기에 대한 기간적 제한없이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는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과세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세액공제는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가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의 존재는 과거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미래 과세소득의 창출능력 역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안숙찬 2003). 따라서 과거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크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을 것이므로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크기와 인식률은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 다. 이익조정 유인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갖는다(Watts and Zimmerman, 1986). 반면에 규모가 클수록 미래과세소득 창출능력에 대한 경영자의 낙관적인 기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김상현·백원선, 2006).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을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을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 유인이 존재한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계약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갖는다(Watts and Zimmerman, 1986).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것이다(안숙찬 2005). 그러므로 부채비율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은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고이익을 높일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김상현·백원선, 2006). 그러므로 재무적 곤경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은 양(+ )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이익침해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에게 집중될수록 자산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며(La Porta et al. 1999), 이익을 상향조정 한다(박종일 2003). 따라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대주주지분율은 양(+ )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 라. 감사품질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력이 낮아 부실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최 관·최국현, 2003). 또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은 경영자의 보고이익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감사위험을 낮추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될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감사품질은 음(- )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과 결정요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식(7)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인식률} = & \alpha_0 + \alpha_1 ADD_{it} + \alpha_2 INCOME_{it} + \alpha_3 NOLTC_{it} + \alpha_4 SIZE_{it} \\ & + \alpha_5 LEV_{it} + \alpha_6 DISTRESS_{it} + \alpha_7 IOC_{it} + \alpha_8 BIG_{it} + \sum_{i=9}^{17} \alpha_i YD + \sum_{i=18}^{32} \alpha_i I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7)$$

여기서, 인식률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ADD_{it}$  : 가산할 일시적차이 / 차감할 일시적차이

$INCOME_{it}$  : 최근3년간 경상이익률의 평균

$NOLTC_{it}$  :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 차감할 일시적차이

$SIZE_{it}$  : 기초총자산의 로그값

$LEV_{it}$  : 부채총계 / 총자산총계

$DISTRESS_{it}$  : 직전 3개연도 경상이익 또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면 1, 아니면 0.

$IOC_{it}$  : 대주주 지분율

$BIG_{it}$  :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YD$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미래과세소득의 충분성의 대용치인 가산할 일시적차이(ADD)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미래예상과세소득(INCOME)은 최근3년간 경상이익률의 평

균으로 측정하였다.<sup>15)</sup> 그리고 부채비율(LEV)은 부채총액을 총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의 크기(NOLTC)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를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익조정 유인의 대용치인 기업규모(SIZE)는 기초총자산의 로그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재무적곤경(DISTRESS)은 직전 3개연도 경상이익 또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감사품질(BIG)은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도별 세율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YD)를 포함하였으며, 산업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ID)를 포함하였다.

식(7)의 종속변수인 인식률은 연속적이지만 특정의 값(0)에서 절단되어있는 제한적 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이므로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하여 토빗분석(tobit)을 수행하였다. 식(7)의 연구모형을 이용한 토빗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된다.

<표 6>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과 결정요인

$$\text{연구모형 : 인식률} = \alpha_0 + \alpha_1 ADD_{it} + \alpha_2 INCOME_{it} + \alpha_3 NOLTC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LEV_{it} + \alpha_6 DISTRESS_{it} + \alpha_7 IOC_{it} + \alpha_8 BIG_{it} + \sum_{i=9}^{17} \alpha_i YD + \sum_{i=18}^{32} \alpha_i ID + \epsilon_{it}$$

| 종속변수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    |      |         |         |
|------------------------|------|---------|---------|
| 변 수                    | 예상부호 | 계수값     | T값      |
| 절편                     |      | 0.6043  | 9.42*** |
| ADD <sub>it</sub>      | +    | 0.0038  | 5.56*** |
| INCOME <sub>it</sub>   | +    | 0.3689  | 6.13*** |
| NOLTC <sub>it</sub>    | -    | -0.1512 | 8.07*** |
| SIZE <sub>it</sub>     | +/-  | 0.0058  | 2.47**  |
| LEV <sub>it</sub>      | +    | -0.0082 | -0.45   |
| DISTRESS <sub>it</sub> | +    | 0.0304  | 1.92**  |
| IOC <sub>it</sub>      | +    | 0.0371  | 2.38**  |
| BIG <sub>it</sub>      | -    | -0.0061 | -0.99   |
| 산업 및 연도더미              |      | 포함됨.    |         |
| 표본수                    |      | 3,589개  |         |
| Log Likelihood         |      | 1293    |         |

15)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도 구체적으로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경영자의 판단 결과만을 공시하고 있다. Miller and Skinner(1998), Behn et al.(1998), 안숙찬(2005) 등 선행연구에서는 미래과세소득의 대용치로 최근 3년간 경상이익률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 주1) 변수명 정의

|                     |                                                                                |
|---------------------|--------------------------------------------------------------------------------|
| 이연법인세자산인식률          | :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 전액인식 이연법인세자산                                                   |
| 미래과세소득의<br>충분성      | ADD <sub>it</sub> : 가산할 일시적차이 / 차감할 일시적차이                                      |
|                     | INCOME <sub>it</sub> : 최근 3년간 경상이익률(경상이익 / 기초총자산)의 평균                          |
| 이월결손금 및<br>세액공제의 크기 | NOLTC <sub>it</sub> :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 차감할 일시적차이                                 |
| 이익조정유인              | SIZE <sub>it</sub> : 기초총자산의 로그값                                                |
|                     | LEV <sub>it</sub> : 부채총계 / 총자산총계                                               |
|                     | DISTRESS <sub>it</sub> : 직전 3년간 경상이익 또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이면 1, 아니면 0. |
|                     | IOC <sub>it</sub> : 대주주지분율                                                     |
| 감사품질                | BIG <sub>it</sub> :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                     | YD : 연도더미                                                                      |
|                     | ID : 산업더미                                                                      |

2) \*\*\*, \*\*, \*은 유의수준 1%, 5%, 10%를 나타낸다.

3) 산업 및 연도더미의 회귀계수는 지면관계상 생략됨.

4) 인식률 측정이 가능한 전체 3635개 표본 가운데 과거 2개연도의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46개의 표본은 회귀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음.

<표 6>의 결과 미래과세소득의 대응치인 가산할 일시적차이(ADD)의 회귀계수는 0.0038로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예상과세소득(INCOME)의 회귀계수는 0.3689로 유의수준 1%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16호에 따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의 크기(NOLTC)의 회귀계수는 -0.1512로 유의수준 1%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가 클수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 결손 등이 있는 기업은 미래에도 이를 보전할 만큼 충분한 미래과세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익조정의 유인을 나타내는 기업규모(SIZE)의 회귀계수는 0.0058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곤경(DISTRESS)의 회귀계수는 0.0304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주주지분율(IOC)의 회귀계수는 0.0371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LEV)의 회귀계수는 -0.0082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 유인이 있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품질(BIG)의 회귀계수는 -0.0061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환경이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요약하면,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 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한계점

1999년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인세회계가 도입되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을, 이연법인세부채는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다. 실현가능성과 소멸가능성은 경영자의 추정이 개입되므로 경영자의 재량권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대차대조표상 인식되지 않는 이연법인세자산 즉, 평가충당금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충당금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전액 인식될 경우 총액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상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차감하여 측정하였으며 두 금액의 비율로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가산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소멸가능성을 추정한 후 전액인식 이연법인세부채에 곱하여 측정하였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전체표본의 소멸가능성은 약 92%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가운데 약 8%는 소멸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부분인식이 모든 연도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경우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이 약 93%인 반면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소멸가능성은 약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클수록 경영자들은 소멸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작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체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1,986백만원이고 인식률은 약 93%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 가운데 약 7%는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대차대조표상 인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3,865백만원, 인식률은 약 89%로 나타났으며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평가충당금은 113백만원, 인식률은 약 97%로 나타났다.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 대응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한 순이연법인세부채 표본의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순이연법인세자산 표본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은 9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Miller and Skinner(1998)가 제시한 인식률인 약 88%보다 약 5%p 높은 수치이다. 미국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하며, 우리나라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이 미국보다 약 5%p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미국보다 인식요건이 더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조정 수단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을 통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과 기업특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할수록,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가 작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클수록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의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에 대한 기본 연구로서 순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표본에 대하여 평가충당금 및 인식률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향후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일정한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는 점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소멸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과 인식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를 감소시켰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상현 · 백원선. 2006.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93 - 224.
- 김성기. 2002. “중요성의 결정.” 한국회계연구원 토론회 제 17호 : 1 - 179.
- 박종일.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 최대주주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 권 제2호 : 135 - 172.
- 신현걸. 2003. “이연법인세인식 및 공시현황에 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39권 : 55 - 74.
- 안숙찬. 2005.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8권 제3호 : 1175 - 1196.
- \_\_\_\_\_. 2007.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이익조정.”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2호 : 815 - 839.
- 최 관 · 최국현. 2003.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감리지적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 28권 제2호 : 211 - 243.
- 최원욱 · 장금주. 2007.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 상호저 축은행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113 - 150.
- Bauman, C., M. Bauman, and R. Halsey. 2001. Do firms use the defer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 to manage earning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Supplement) : 27 - 48.
- Frank, M. M., and S. Rego. 2006. Do managers use the valuation allowance account to manage earnings around certain earnings target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8 (1) : 43 - 65.
- La Porta, R., F. Lopez - De - Silanes, and A. Shleifer, 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 : 471 - 518.
- Miller, G. S., and D. J. Skinner 1998.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under SFAS No. 109. *The Accounting Review* 73(April) : 213 - 233.
- Pattillo, James W. 1983. The Materiality Principle :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Corporate Accounting* (Summer)
- Reazee Z. 2002. Financial Statement Fraud - Prevention and Detection. *John Wiley and Sons*.
- Visvanathan, G. 1998. Deferred tax valuation allowance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 (4) : 6 - 10.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Kim, Young Chul\* · Kim, Woo Young\*\* · Ko, Jong Kwon\*\*\*

## 〈Abstract〉

According to Statements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No. 16 : Accounting for Income Taxes, if the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tax loss carryforward and tax credit carryforward which are the components of deferred tax asset (hereinafter,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cannot recognize deferred tax asset in balance sheet. 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hereinafter, valuation allowance) pertains to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n SFAS No. 109 in the U.S., but it is not marked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 Accounting Standards in which net amount is marked after offsetting deferred tax asset and debt. The valuation allowance of deferred tax asset is the result of realizability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and i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CEO's discretion.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rough sugges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In this study, we select as sample manufacturing firms of KOSPI with closing in December from 1999 to 2008, and we use tax adjustment items extracted from net deferred tax data in the balance sheet, footnotes in the audit report. We measure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by subtracting the total deferred tax asset which is recognized in the balance sheet from total of deferred tax asset able to be appropriated in the balance sheet without considering realizability. We also measure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with ratio of two amoun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mount of valuation allowance is 1,986 million won and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is 93%. This result means that 1,986 million won is not recognized as deferred tax asset since to realize 7% of deductible temporary differences, etc. is uncertain. We also verify the determinants of tax asset realizability through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and firm characteristics. The result from additional analysis shows as expected that the higher the future taxable income the highe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the higher the ratio of tax loss or credit carryforward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We also find that financial distress, ownership may affec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 Ph. 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kyc7902@hanyang.ac.kr

\*\* Full Time Lecturer, College of Social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kimwy01@dongduk.ac.k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jkko@hanyang.ac.kr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ant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estimation method and estimates for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as basic study on valuation allowance and earnings management. It also could be called a developed study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mproves the estimation method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reversal possibility of deferred tax liability in calculating the amount and ratio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Key words> Deferred Tax Asset, Deferred Tax Liability, The amount and ration of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 Realizability, Reversal Possibility